

예산총칙

2019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85,128,375	20,553,851
일반회계	632,516,648	18,975,499
특별회계	52,611,727	1,578,352
공기업특별회계	23,364,308	700,929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3,364,308	700,929
기타특별회계	29,247,419	877,423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083,759	182,513
주택사업특별회계	65,592	1,96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4,883,826	446,515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655,000	19,65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132,533	33,976
자활기금운영특별회계	1,390,460	41,714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1,320,618	39,619
주차장특별회계	949,349	28,480
임대아파트관리운영특별회계	2,766,282	82,988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3,000,000천원으로 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2,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6,1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